

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조(정의) 1 ~ 14 (생략)	제2조(정의) 1 ~ 14 (현행과 같음)	
15. “원산지증빙서류”란 <u>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·정보 등을 말한다.</u>	15. ----- 송품장(INVOICE) 등 무역서류, 생산관련 자료(공정설비, 생산지 정보),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-----.	용어의 정의 구체화
16. “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”이란 <u>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.</u>	16. ----- <u>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u> ----- -----.	○ 개정 법률명 반영
제4조(원산지표시 원칙) ① ~ ③ (생략)	제4조(원산지표시 원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④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9조에 따른	④ -----	○ 가지번호 정정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<u>별표 2의1과</u> 같다.</p> <p>제6조(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6조제7항에 따라 「식품위생법」·「<u>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</u>」·「<u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</u>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(또는 제조국)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13조(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) ①</p> <p>· ② (생략)</p> <p>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</p>	<p>-----</p> <p>-<u>별표 2의2와</u> -----.</p> <p>제6조(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</u>」·「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	<p>○ 개정 법률명 반영</p> <p>○ 세관공무원의 범칙 조사에 관한 훈령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<u>고발(송치)의뢰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)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, 「대외무역법」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<u>고발(송치)의뢰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고발(송치)·조사종결</u>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<u>조사</u> <u>의뢰</u>-----.</p> <p>제14조(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사의뢰</u>-----.</p> <p>② <u>조사의뢰·조사종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개정('20.2.1)에 따른 용어 수정</p> <p>○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('20.2.1)에 따른 용어 수정</p> <p>○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('20.2.1)에 따른 용어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16조(시정명령) ① 법 제230조 단서,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3조제2항 및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해야 한다. 다만,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시정명령) ① ----- ----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개정 법률명 반영</p>
<p>제17조(원산지표시 보수작업) ①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7조(원산지표시 보수작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8조(고발 의뢰)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</p>	<p>제18조(조사 의뢰) ①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소액사건 조사의뢰 생략으로 조사부서 업무경감 및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때에는 <u>조사부서에 고발</u> 의뢰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의2(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·과태료)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</p>	<p>--- <u>별표 9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</u> ----</p> <p>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</p> <p>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2(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·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----- 「<u>농수산물</u>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</p>	<p>적발 부서장 재량권 부여</p> <p>○ 개정 법률명 반영</p> <p>○ 개정 법률명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령」 별표 1의2에 따르며, 해당 별표에서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 격(CIF)으로 한다.</p> <p>제19조의3(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) 세관장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 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해야 한다.</p> <p>제20조(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·② (생략) ③ 「대외무역법」 및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, 과징금 등 처분</p>	<p>행령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9조의3(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) ----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0조(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</p>	<p>○개정 법률명 반영</p> <p>○개정 법률명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	
<p>제20조의2(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) ① 「<u>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0조에 따른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의2(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) ① 「<u>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개정 법률명 반영</p>
<p>제21조(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) ①·② (생략)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</p>	<p>제21조(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14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,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2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1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p> <p><u>부칙 <제2021-63호, 2021.12.08.></u></p> <p><u>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일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4조(재검토기한)</u> -----</p> <p>-----2022년 7월 1-----</p> <p>----- <u>6월</u></p> <p><u>30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부칙 <제2022- 호, 2022. . .></u></p> <p><u>이 고시는 2022년 4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[별표 1]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</p> <p>1.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-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<견고한 스티커, 꼬리표 표시 인정></p> <p>2.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-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·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<양면접착식 스티커, 꼬리표 표시 인정></p> <p>-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<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></p> <p>-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<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></p> <p>3.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-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<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></p> <p>4.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- 컴퓨터, 전화기, 계산기, TV 등 가전제품 <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></p> <p>- 의류 등 섬유제품·가방·신발 <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></p> <p>- 비누, 칫솔, 비데오테일, 칼날면도기,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·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<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></p>	<p>[별표 1]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</p> <p>1.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-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<견고한 스티커, 꼬리표 표시 인정></p> <p>2.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-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·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<양면접착식 스티커, 꼬리표 표시 인정></p> <p>-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<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></p> <p>-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<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></p> <p>3.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-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<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></p> <p>4.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- 컴퓨터, 전화기, 계산기, TV 등 가전제품 <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></p> <p>- 의류 등 섬유제품·가방·신발 <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></p> <p>- 비누, 칫솔, 칼날면도기, 건전지 등 밀봉 포장·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<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></p>	<p>○ 밀봉 포장·봉인 판매물품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인정 관련 세관장 재량권 부여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</p> <p>□ 일반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표에 개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. ○ 본 표에 개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. ○ 본 표에서 허용되는 ‘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’는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.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1046 927 1190"> <thead> <tr> <th>HS</th> <th>물품명</th> <th>적정표시방법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708</td> <td>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</td> <td>○현품 원산지 표시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7]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</p> <p>1.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, 규격 등만 표시하고,</p>	HS	물품명	적정표시방법	비고	8708	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	○현품 원산지 표시		<p>[별표 2]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</p> <p>□ 일반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표에 개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. ○ 본 표에 개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. ○ 본 표에서 허용되는 ‘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’는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.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999 1711 1142"> <thead> <tr> <th>HS</th> <th>물품명</th> <th>적정표시방법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708</td> <td>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</td> <td>○현품에 원산지 표시 ○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7]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</p> <p>1.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, 규격 등만 표시하고,</p>	HS	물품명	적정표시방법	비고	8708	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	○현품에 원산지 표시 ○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		<p>○ 산업부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인정</p> <p>○ 산업부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</p>
HS	물품명	적정표시방법	비고															
8708	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	○현품 원산지 표시																
HS	물품명	적정표시방법	비고															
8708	자동차 부분품, 부속품	○현품에 원산지 표시 ○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</p> <div data-bbox="174 387 927 517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, 규격 등만 표시하고,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</div> <p>2. 현품(또는 최소포장)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(또는 최소포장)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</p> <div data-bbox="174 791 927 1126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사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○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○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○ 김치,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,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○ 중국산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</div>	<p>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</p> <div data-bbox="958 387 1711 517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, 규격 등만 표시하고,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</div> <p>2. 현품(또는 최소포장)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(또는 최소포장)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</p> <div data-bbox="958 770 1711 1106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사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○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○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○ 김치,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,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○ <삭 제> </div>	<p>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인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
<p><신설></p>	<p>[별표 9] 조사의뢰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335 1704 582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965 335 1357 395">구분</th> <th data-bbox="1357 335 1704 395">조사의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65 395 1070 582">공산품</td> <td data-bbox="1070 395 1357 582">- 대외무역법 제53조의2</td> <td data-bbox="1357 395 1704 582">- 적발금액 2,000만원 이상 (다만,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,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</p>	구분		조사의뢰	공산품	- 대외무역법 제53조의2	- 적발금액 2,000만원 이상 (다만,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,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)	<p>○ 소액사건 조사의뢰 생략으로 적발 부서장 재량권 부여 및 조사부서 업무 경감</p>
구분		조사의뢰						
공산품	- 대외무역법 제53조의2	- 적발금액 2,000만원 이상 (다만,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,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)						